
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시행 대비 추진계획(안)

< 2016. 9. 13.(화), 감사실 >

□ 개 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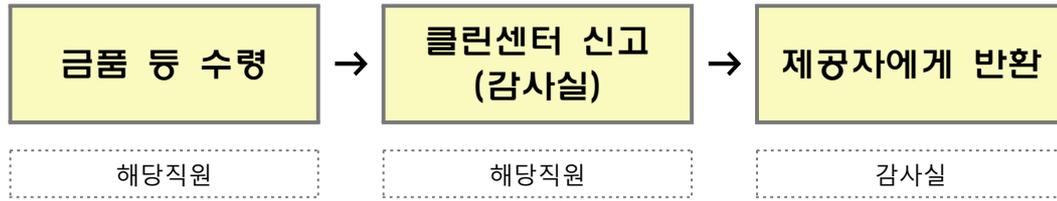
- 법 령 명 :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이하 청탁금지법)
- 시 행 일 : 2016. 9. 28.(수) [2015.3.27., 제정]
- 추진방향 : 「청탁금지법」 시행에 따른 행위기준 보완 및 적극 홍보로 부정청탁행위 금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

□ 추진내용

① 기반조성

- 우리원 임직원행동강령 개정 (9월 중)
 - 우리원 임직원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령 중 상이한 행위기준 보완
 - 법 제20조(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)에 따라 청탁방지담당관 감사실장 지정
 - ‘청렴기부함’ 및 착불제도 실시
 -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감사실 ‘청렴기부함’을 마련하여 감사실에서 제공자에게 반납하는 ‘착불제도’ 실시
- ※ 추진근거 : 법 제9조(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)

－ 처리절차



※ 착불 반환이 불가할 경우, 반환비용은 감사실 예산사용

2 교육 및 홍보

○ 전직원 교육

- － 권익위 주관 청탁금지법 권역별 순회 설명회 (7. 1.)
- － 보건복지부 주관 청탁금지법 교육 (9. 7.)
- －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탁금지법 교육 (9. 8.)
- － 전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(9. 9., 9. 12.)
- － [청탁금지법 바로알기]자료 사내 게시판 공지 (9. 19.~)
- － ‘청렴지기’ 대상 청탁금지법 FAQ 교육 (9월 4주)

○ 청탁금지법 홍보

- －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안내표지 기관출입문 게시 (9월 중순)
- － 사내게시판 및 홈페이지, 사내방송을 통한 홍보 (9월 마지막주)

3 지원체계 구축

○ 위반행위 신고센터 활성화 (8. 31. 청렴지기 교육안내)

- － 원내 그룹웨어 신고시스템 보완 및 신설
 - 기존 ‘청탁등록시스템’ 신고양식 및 절차 보완
 - ‘금지 금품 신고시스템’ 신설

- 기관 홈페이지 '신고센터' 운영체계 활성화
 -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: 임직원이 「임직원 행동강령」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자진 신고하는 창구
 - 부패행위 익명신고 활성화 : 대내외에서 관련 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창구 (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운영)
- 청탁금지법 안내 및 질의응대 전담직원 지정 (감사실)
- 권익위 작성 청탁금지법 대응 매뉴얼 배포 (9월)
- 법 시행 이후 기관 애로사항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 (10월)